

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

<최종공포일 2023.2.20.>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윤리경영실천규정 제21조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반부패 청렴 및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02.05.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당연직 위원은 부원장, 연구소장, 기획본부장, 사업화본부장, 행정본부장, 글로벌홍보부장, 감사부장으로 하며,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책임급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9.05.16, 2019.07.15, 2022.03.15., 2023.02.20>

제3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반부패 청렴 및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
2. 윤리헌장, 임직원행동강령실천요령 제·개정
3. 반부패 청렴 및 윤리경영관련 제 규정의 유권해석
4. 반부패 청렴 및 윤리경영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성과 모니터링
5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간사) 위원회의 제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청렴윤리실장이 된다. <개정 2021.07.13.>

제6조(회의소집 등) ① 관련부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윤리경영위원회 심의(안) (별지 제1호)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결재로 안건을 확정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. <개정 2021.02.05.>

② 위원장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

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

제8조(결과조치) 간사는 심의된 사항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즉시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한다.

제9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장은 반부패 청렴 및 윤리경영 방침의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체로서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.

1. 연구윤리분과위원회(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9조에 의한 본조사위원회)

가. 위원장 : 기획본부장 <개정 2019.05.16.>

나. 위원 : 해당 연구분야의 내·외부 전문가 6~7명

다. 간사 : 사업전략부장

라. 세부추진분야 : 연구진실성 검증 등

2. 인사윤리분과위원회

가. 위원장 :인적자원부장 <개정 2019.07.15.>

나. 위원 : 해당분야의 내·외부 전문가 6~7명

다. 간사 : 인사관리실장

라. 세부추진분야 : 인사, 복무, 겸업, 교육훈련, 복지 등

3. 투명경영분과위원회

가. 위원장 : 행정본부장 <개정 2019.05.16.>

나. 위원 : 해당분야의 내·외부 전문가 6~7명

다. 간사 : 운영복지실장 <개정 2019.07.15.>

라. 세부추진분야 : 사회공헌, 회계, 구매, 시설, 건설 등

4. 사업화윤리분과위원회

가. 위원장 : 사업화본부장 <개정 2019.05.16, 2019.07.15., 2023.02.20>

나. 위원 : 해당분야의 내·외부 전문가 6~7명

다. 간사 : 기술이전실장

라. 사전심의분야 : 중소기업 기술이전, 기술지원, 중소기업 현장지원 인력파견 등

-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침의 제·개정시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본 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- ③ (타 지침의 개정)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1항의 "위원장은 선임소장으로 하되, 본 조사 사안이 선임소장이 속한 직할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직할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"를 "위원장은 연구전략부문장으로 하고"로, 제4항의 "기획본부 연구기획실장"을 "연구전략부분 사업기획실장"으로, 제19조 제4항의 "기획본부 연구기획실"을 "연구전략부분 사업기획실"로 개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타 지침의 개정)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1항의 “위원장은 연구전략부문장으로 하고”를 “위원장은 창의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고”로, 제4항의 “연구전략부문 사업기획실장”을 “창의경영기획본부 사업기획실장”으로, 제19조 제4항의 “연구전략부문 사업기획실”을 “창의경영기획본부 사업기획실”로 개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9.05.16)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9.07.15)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02.05)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07.13)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03.15) <직제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"홍보부장"을 "글로벌·홍보부장"으로 한다.

- ② 부터 ③까지 생략

부칙(직제규정시행요령) <2023.02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요령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원규의 개정) ① 지역연구센터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 중 "서울SW-SoC융합R&BD센터"를 "수도권연구센터"로 한다.

② 해외사무소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 중 "중소기업사업화본부"를 "대외협력부"로 한다. 제6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, 제8조제1항, 같은 조 제4항, 제9조제1항 중 "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"을 각각 "대외협력부장"으로 한다.

③ 연구사업심의위원회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"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"을 "사업화본부장"으로 한다.

④ 기술이전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6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, 제38조제1항, 제41조제2항, 제43조제1항 중 "중소기업사업화본부"를 각각 "사업화본부"로 한다. 제41조제1항 중 "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"을 "사업화본부장"으로 한다.

⑤ 창업및출자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2제3항, 같은 조 제5항, 제17조제2항,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"을 각각 "사업화본부장"으로 한다. 제10조의2제3항의 "중소기업사업화본부"를 "사업화본부"로 한다.

⑥ 사업화심의위원회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및 제10조 중 "중소기업사업화본부"를 "사업화본부"로 한다. 제2조제2호 중 "지능융합연구소"를 "ICT전략연구소"로 한다. 제3조제2항 중 "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"을 "사업화본부장"으로 한다. 제3조제2항 중 "기술상용화센터장"을 "기업성장지원부장"으로 한다.

⑦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4항 중 "중소기업사업화본부"를 "사업화본부"로 한다.

⑧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"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"을 "사업화본부장"으로 한다.